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李 珣 秀

(육군사관학교 부교수)

- 머 리 말
- 講武制度的 성립
- 강무 시행 사례
- 강무 시행의 군사적 기능
- 맺 음 말

1. 머 리 말

조선 건국 초기는 왕권의 안정과 外敵의 진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던 시기였다. 대내적으로 官制의 정비와 軍權의 통일을 통하여 체제를 정비해 나갔고, 대외적으로는 왜구 소탕, 여진족 정벌과 회유를 통하여 안정을 추구해 나갔다. 특히 군역제도를 정비하여 군역자원을 확대하고 무기를 개량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사력의 바탕은 군사들의 훈련 정도에 달려 있었다

고 생각된다.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烏合之卒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초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兵營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방의 군사들은 서울의 中央軍이나 지방의 營鎮에 몇 개월씩 복무하고 집으로 돌아와 생업인 농사에 종사해야 했다.

조선 초기의 軍事制度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육군본부에서 펴낸 『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을 비롯하여 軍役に 대한 연구와 兵種에 대한 연구, 武科에 대한 연구와 수군에 대한 연구, 火器에 대한 연구와 兵書에 대한 연구 등 조선초기의 軍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 훈련과 관련된 연구는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¹⁾ 중앙에 번상하였던 번상 정병의 훈련 내용이나 下番 중인 군사의 훈련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未踏 상태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²⁾

조선초기 군사의 훈련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가 講武이다. 강무란 국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냥하는 제도인데, 太祖 때부터 시작되어 태종, 세종, 세조대에 매우 활발하게 시행되었던 군사 훈련 방식이었다.

本稿에서는 조선 건국 초부터 성종대까지 강무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강무의 군사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왜 조선왕조는 講武라는 방식으로 군사 훈련을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강무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강무를 통해 어떤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하는 의문들을 가져보았다. 이를 위해 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

1) 최근 조선시대 군사훈련 기관인 訓練院에 대한 연구가 나온 것은 군사 훈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朴洪甲,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정과 역할」, 『軍史』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8).

2) 講武에 대해서는 朴道植, 「朝鮮初期 講武制에 관한 一考察」(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이 유일하다. 이 논문은 강무제도의 성립 과정과 강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2. 講武 制度의 성립

(1) 강무 시행 배경

講武란 국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정 지역에 출동, 그 지역에서 사냥하고 복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국왕의 사냥 행위를 講武라고 한 것은 국왕의 사냥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동원된 사람들이 일정한 명령 체계를 유지하며, 사냥을 위해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군사 훈련과 같은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왕이 군사의 동원 없이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하루 일정의 사냥 행위인 打圍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강무는 중국 고대의 周나라에서 天子가 매년 春夏秋冬에 행하던 蒐(수)·苗(묘)·獮(선)·狩(수)에서 유래하였다.³⁾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는 여가를 이용하여 군사 훈련을 시켜줌으로써 유사시 동원하여 軍士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후 강무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태조 5년 11월에 의흥삼군부에서 올린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周나라에서는 봄과 여름에 軍幕에서 軍士를 훈련하고, 가을과 여름에는 군사를 查閱하는 제도가 있어서 평소에 군사를 잘 훈련함으로써 유사시 활용하였는데, 秦나라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函谷關에서 쉽게 패배한 것이라고 하면서 周나라의 제도를 加減하여 蒐狩講武圖를 만들어 서울에서는 사계절의 끝 달에, 지방에서는 春秋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宗廟와 社稷에 제사지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⁴⁾

3) 『春秋左氏傳』 隱公 5년, “春蒐夏苗秋獮冬狩 皆於農隙 以講事也. 三年而治兵 入而振旅 歸而飲至以數軍實 昭文章 明貴賤 辨等列順少長習威儀也”. 『孟子集注』 梁惠王 下, “古者 四時之田 皆於農隙 以講武事”.

4) 『太祖實錄』 권10, 5년 10월 甲申(30)조. “……取古制而損益之 見作蒐狩講武圖 京中當四

이 상소문에 의하면, 전적으로 군사 훈련을 위해 강무 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강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사를 동원하여 국왕과 함께 사냥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무예도 익히고 명령 체계를 확인하고 숙달시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강무를 시행하려 하였던 것은 이를 통하여 軍權을 장악하고, 국왕의 위엄을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태종 2년 4월에 私兵을 혁파하고, 그해 7월에 原從功臣의 시위패를 삼군부에 귀속시킨 조치가 있던 직후에 태종이 강무를 계획하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더욱이 강무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제사지냄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강무장과 그 사이를 오가는 지역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武力 示威의 효과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태조대에는 講武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태조 6년 12월에 경기 楊州 목장에서 하루 동안 사냥하고 돌아왔을 뿐이다.⁵⁾ 강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태종이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던 태종 3년 이후부터였다. 태종 2년(1402) 가을에 해주에서 강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간원의 諫官들이 ‘恐懼修省’하기를 간청하여 그만 둔 일이 있는데,⁶⁾ 그 다음 해 봄부터는 매년 강무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2) 강무 시기와 장소

강무의 시기는 농사철을 피하고 추위에 대한 부담이 적은 봄과 가을로 정해졌다. 중국 고대에 1년에 네 차례 춘하추동에 강무가 행해졌다는 것을

時之季講武 獲禽以祭宗社 外方當春秋兩節講武 獲禽以祭方社之神 如此則武事熟 神人和矣……上從之”.

5) 『太祖實錄』 권12, 6년 12월 癸巳(15)조.

6) 『太宗實錄』 권4, 2년 9월 己亥(19)조.

알고 있지만 苑囿가 없는 조선에서는 일년에 네 차례의 강무를 한다는 어려운 일이었다. 태종이 강무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한 左司諫 安魯生과 태종과의 대화는 강무를 봄과 가을에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잘 드러나 있다.⁷⁾

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지금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원컨대 예전의 四時의 사냥에 의하여 仲冬에 강무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左司諫 安魯生을 불러 命하기를, “강무의 법이 일찍이 上王의 때에 세워졌는데, 오직 봄·가을 두 차례뿐이니, 古制의 四時의 사냥에 비하면, 오히려 未備하다. 그러나 두 때의 사냥도 오히려 그 폐단을 염려하여, 가을에는 수확이 끝나고, 기후가 춥지 않은 때를 기다려서 10월을 쓰니, 고금을 참작하여 폐단이 없다 하겠다. 지금 말하기를, “예전 제도의 사시의 사냥하는 것에 의하자” 하니, 만일 그렇게 한다면 봄은 2월, 여름은 5월, 가을은 8월, 겨울은 11월인데, 10월에 수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8월에는 수확이 끝났느냐? 그리고 5월에는 禾穀을 밟아 상할 폐단이 없느냐? 11월에는 군사와 말이 춥고 언다.” 하였다.

魯生이 말하기를, “예전에 중국에는 苑囿가 있으므로 여름과 가을에도 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유가 있으면 四時에 행하지마는, 우리 나라에는 원유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더러 사시의 사냥을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국왕의 사냥을 위해 별도의 강무장인 苑囿를 만들지 않고, 매년 봄과 가을의 농한기를 이용해 강무를 하게 된 것이다.

태종대에 강무장은 일정한 곳이 없었다. 황해도 해주, 경기도 양주, 마전, 광주, 금천, 부평, 강원도 횡성, 평강, 충청도 태안, 전라도 임실 등 전국 각지에서 강무가 행해졌다. 강무장으로 지정되면 耕作은 물론, 伐木과 私獵이 금지되고 풀베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의 백성들에

7) 『太宗實錄』 권6, 3년 10월 乙卯(11)조.

게 주는 피해가 컸다. 그래서 각도의 관찰사들은 자기 道에서 강무가 시행되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래서 태종 14년 8월에 사간원에서는 講武의 常所를 정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⁸⁾ 이에 따라 태종 15년 2월에 강무 장소를 정하게 되었다. 이때 강무장으로 선정된 지역은 강원도 平康·橫川(횡성)·伊川·平昌·江陵·珍寶·芳林·大和·原州의 覺林寺와 實美院 등지와 豊海道の 牛峯·大菴山과 京畿의 臨江·水回·馬城·長湍·七牆과 開城留後司의 大正窟이[答井串]·德連洞口·安峽·廣州·楊根 등지로서 종래 강무를 해왔던 곳 중에서 충청도 태안과 전라도 임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었다.⁹⁾

그 후, 강무장은 세종 2년에 대폭 축소되어 경기도 廣州와 陽根, 강원도 鐵原과 安峽, 강원도 平康과 伊川, 강원도 橫城과 珍寶 등 4지역으로 묶여졌다.¹⁰⁾ 실제로 세종대에는 이 네곳에서만 강무가 행해졌다. 세조대에는 강무 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주로 경기 豊壤(현 남양주군 별내면), 龍仁, 果川 등지의 가까운 곳에서 강무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3. 강무 시행 사례

(1) 태종대의 강무

본격적으로 강무가 시행된 것은 태종 3년(1403) 이후이다. 태종도 처음에는 온천 행차를 명분으로 강무를 시행하려고 하였다. 태종 2년(1402) 9월에 태종이 황해도 平州의 온천에 목욕하러 가겠다고 밝히자 사간원에서

8) 『太宗實錄』 권28, 14년 9월 己亥(29)조.

9) 『太宗實錄』 권29, 15년 2월 辛未(3)조.

10) 『世宗實錄』 권7, 2년 2월 庚申(22)조.

온천 목욕의 이름을 빌어 遊田을 즐기려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태종은 그렇다면 강무를 하겠다고 하고 강행하려 하였다.¹¹⁾ 그러나, 그 해의 강무는 시행되지 못하고 李叔蕃에게 명하여 甲士 5백명을 거느리고 郊外에서 사냥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만족해 하였다.¹²⁾

태종은 이듬해 3월 중순에 황해도 松林 일대에서 강무를 시행하였다.¹³⁾ 이는 비록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의 짧은 강무였지만 국왕이 지방에

<표 1> 태종대의 강무 시행 사례

년 도	춘/추	기 간	일수	장 소	비 고
태종 3년(1403)	춘	3. 13-17	5	황해도 송림	
	추	10. 11-18	8	황해도 해주	
4년(1404)	춘	2. 6-18	13	황해도 해주	
5년(1405)	춘	2. 15-28	14	경기 양주, 마천	
6년(1406)	춘	2. 28-3. 3	5	경기 광주	
	추	9. 11-20	10	강원도 철원, 평강	
7년(1407)	춘	2. 13-18	6	경기 광주	
	춘	2. 28-3. 1	3	경기 양주	
	추	10. 12-16	5	경기 금천	
10년(1410)	추	10. 1-5	5	황해도 해주	雷電雨雹으로 중단
11년(1411)	춘	2. 27-3. 2	5	경기 광주	
	추	10. 6-11	6	경기 광주	
12년(1412)	춘	2. 18-3. 3	9	철원	
	추	9. 24-30	7	경기 부평, 이천	
13년(1413)	춘	2. 4-28	25	황해 평주	온천 湯沐 겸행
14년(1414)	춘	2. 27- 3. 6	9	강원도 감화 평강	
	추	9. 3-19	17	강원도 횡성	
15년(1415)	춘	2. 6-29	24	황해도 해주	
	추	9. 25-10. 12	18	강원도 강릉, 횡성	
16년(1416)	춘	2. 4-22	19	충청도 태안	
	추	10. 15-20	6	강원도 평강	
17년(1417)	춘	2. 27-3. 9	12	강원도 원주	覺林寺 방문 병행
	추	9. 28-10. 3	6	경기 이천, 미원	

11) 『太宗實錄』 권4, 2년 9월 己亥(19)조.
 12) 『太宗實錄』 권4, 2년 10월 丙子(26)조.
 13) 『太宗實錄』 권5, 3년 3월 庚寅(13)조.

행차하여 留宿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후 태종은 건강이 극히 나빠진 말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봄·가을에 강무를 시행하여 재위 18년간 23회의 강무를 시행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종은 春等 강무를 13회, 秋等 강무를 10회 실시하였다. 춘등 강무는 2월 초에 실시한 경우도 있었지만,¹⁴⁾ 대체로 음력 2월 하순에서 3월 초까지 시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추위가 풀리고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가장 적합한 시기가 바로 이 때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등 강무는 음력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이는 농사가 끝나고 아직 추위가 심하지 않은 때로서 강무에 적절한 시기였다.

태종대 강무 일수는 대체로 10일 내외였다. 가장 오랫동안 강무를 한 경우는 태종 13년의 춘등 강무로서 이때는 온천 湯沐을 兼行하였던 것으로 25일 동안 황해도 일대에서 강무를 하였고, 태종 15년의 춘등 강무 때에도 24일간 황해도 일대에서 강무를 행한 일이 있다. 이밖에도 태종 16년(1416)의 춘등 강무는 충청도 泰安에서 19일, 태종 15년(1415)의 추등 강무는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18일, 태종 14년(1414)의 추등 강무도 횡성에서 17일 동안 강무를 행하였다.

이에 비해 3~5일의 짧은 강무도 있었다. 태종 7년(1407) 경기 楊州에서 3일간 행한 춘등 강무를 비롯하여, 황해도 태종 3년(1403) 송림에서 춘등 강무, 태종 6년(1406)년 경기 廣州에서 춘등 강무와 경기 衿川에서 추등 강무, 태종 10년(1410) 해주에서 추등 강무, 11년(1411) 廣州에서 춘등 강무 등은 5일 동안 행해진 강무였다.

이 외에는 6일에서 10일 정도의 강무일수 대부분이었다. 태종대에 시행된 강무 일수를 평균해 보면 춘등 강무에서 11.1일, 추등 강무에서 8.8일로서 전체적으로 10.1일이 되고 있다.

14) 태종 13년(1413)에는 황해도 平州에 溫泉 湯沐을 위해 2월 초4일에 출발하여 28일에 還宮하였으며, 태종 15년(1415)에는 2월 초6일에 해주로 출발, 29일에 還宮하였고, 태종 16년(1416)에도 2월 초4일에 태안으로 출발하여 22일에 還宮하였다.

이처럼 강무 일수가 일정치 않은 것은 강무장의 거리와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무를 주도한 태종의 의지에 좌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4년 2월에 행해졌던 춘등 강무 경우에는 최초로 강무 기간을 8일로 계획하였으나, 태종의 요망에 의해 13일로 연장된 일도 있었으며,¹⁵⁾ 반대로 태종 10년(1410) 추등 강무처럼 기상 관계로 조기 환궁한 일도 있었다.¹⁶⁾

다음으로 태종대 강무 장소를 살펴보면, 황해도 해주와 평주, 경기의 廣州, 楊州, 富平, 利川, 그리고 충청도 泰安과 강원도 횡성, 평강, 철원 등 다양하였다. 태종은 강무의 常所를 정해야 한다는 사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논의토록 한 결과,¹⁷⁾ 태종 15년(1415) 2월에 강무 예정지를 선정하였다. 이 때 선정된 講武場은 강원도 平康, 橫川(횡성), 伊川, 강릉, 원주 등지와 豊海道(황해도) 牛峰, 경기 臨江, 水回, 馬城, 長湍, 七牆, 安峽, 廣州, 楊根 등지였다.¹⁸⁾

그러나, 이런 강무장 선정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강무장을 선정 발표한 이듬 해인 태종 16년 춘등 강무는 강무장에서 제외키로 한 충청도 蕪城 태안곳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¹⁹⁾

이처럼 태종은 태조의 喪中이었던²⁰⁾ 2년간(태종 8년, 9년)을 제외하고는 즉위 3년째부터 거의 매년 봄과 가을에 강무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 지휘체계를 점검하며, 지방 수령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민심을 살피는 기회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5) 『太宗實錄』 권7, 4년 2월 庚辰(9)조, “給軍士及各司員吏三日料 初講武限八日 至是定爲十三日故也”.

16) 『太宗實錄』 권20, 10년 10월 戊午(5)조, “夕次江陰赤布峴之原 夜四鼓始雷電雨雹 震扈從人馬二匹”. 동월 己亥(6)조, “雷雨不止 上輟膳……上泣謂群臣曰 予不以德 不堪負荷 故天變若是……還宮”.

17) 『太宗實錄』 권28, 14년 8월 庚午(30)조와 동년 9월 己亥(29)조 참조.

18) 『太宗實錄』 권29, 15년 2월 辛未(3)조.

19) 『太宗實錄』 권31, 16년 2월 丁卯(4)조.

20)太祖는 태종 8년(1408) 5월에 昇遐하였다.

(2) 세종대의 강무

세종은 태종의 禪位로 즉위하였고, 세종 4년에 태종이 사망할 때까지는 軍權이 태종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종 즉위 후 3년(1421)까지 4차례의 강무가 행해졌는데 모두 태종이 주도하였다. 세종 원년(1419) 3월에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행해졌던 春等 강무는 태종이 주도하고 세종은 따라가는 형식이었고,²¹⁾ 그해 11월의 秋等 강무도 태종이 주도하여 세종을 비롯한 大君들과 宗親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대규모로 시행되었다.²²⁾ 이러한 형태는 세종 2년(1420)의 춘등 강무와 세종 3년(1421)의 춘등 강무에도 이어졌다. 세종 3년 춘등 강무에서는 세종이 定宗의 喪禮를 마치지 않았음을 들어 固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의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식이었다.²³⁾

세종 4년 봄에는 태종의 병이 심하여 강무가 중지되었고, 그해 5월에 태종이 사망하자 세종 6년 봄까지 강무가 중지되었다. 그러므로 세종에 의한 강무는 세종 6년 추등 강무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세종대에 시행된 강무 사례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처럼 세종대에는 세종의 병이 심하였던 말년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강무가 행해져 세종 재위 31년간 총 30회 강무가 있었다. 강무 시기는 태종대와 마찬가지로 춘등 강무는 2월에서 3월 초에 이루어졌고, 추등 강무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21) 『世宗實錄』 권3, 원년 3월 甲寅(9)조, “上王及老上王 講武于鐵原等處 上從之”.

22) 『世宗實錄』 권6, 원년 11월 癸卯(3)조 참조. 정종이 세종 원년 9월에 죽었으나, 달(月)을 날(日)로 바꾸어 喪을 마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태종은 25일만에, 세종은 13일 만에 復을 벗었으므로 강무가 가능하였다.

23) 『世宗實錄』 권11, 3년 2월 丙午(13)조, “上王將講武于鐵原 欲與上偕行 上以喪制未盡固辭 上王曰 雖從講武 非是從獸也 但侍膳問寢而已 若不從之 定省曠矣 雖未終制 爲我從行 上不得已從行”.

<표 2> 세종대의 강무 사례

년 도	춘/추	기 간	일수	장 소	비 고
세종 원년(1419)	춘	3. 10-20	11	강원도 철원, 평강	태종, 정종 동행
	추	11. 3-13	11	강원도 철원, 평강	태종을 비롯 대군, 왕자, 종친, 대신 동행
2년(1420)	춘	2. 1-22	22	황해도 해주	태종 동행
3년(1421)	춘	2. 25-3. 12	17	강원도 진부	태종 동행
6년(1424)	추	9. 27-10. 5	8	강원도 철원	
7년(1425)	춘	3. 9-19	11	강원도 평강, 철원	
	추	9. 28-10. 2	4	경기 광주	
8년(1426)	춘	2. 13-19	7	강원도 횡성	
	추	10. 4-12	9	강원도 평강	
9년(1427)	추	10. 1-5	6	경기 광주	
10년(1428)	춘	3. 9-12	4	경기 양주	가뭄이 심하여 중단
	추	10. 4-12	9	강원도 철원	
11년(1429)	춘	2. 26-3. 6	11	강원도 평강	
12년(1430)	춘	3. 9-3. 17	9	강원도 평강	
13년(1431)	춘	2. 12-21	10	강원도 평강	세자 대동
14년(1432)	춘	2. 19-3. 2	14	강원도 평강	
	추	9. 27-10. 2	6	경기 양주	
15년(1433)	추	9. 27-10. 5	9	강원도 평강	
16년(1434)	춘	2. 6-19	14	강원도 평강, 철원	세자 대동
	추	9. 28-10. 6	8	강원도 평강, 철원	세자 대동
17년(1435)	춘	2. 13-22	10	강원도 철원	철원을 강원도에 편입
	추	10. 10-14	5	경기 수원	세자, 종친 대동
18년(1436)	춘	3. 8-19	12	강원도 철원	종친 부마 대동
19년(1437)	추	10. 2-12	11	강원도 철원, 평강	세자 대동
21년(1439)	춘	윤2. 19-29	11	강원도 철원, 평강	
22년(1440)	추	10. 1-10	10	강원도 평강, 철원	
24년(1442)	춘	3. 3-5. 1	57	강원도 철원, 伊川	중궁, 세자 대동, 濫井 湯沐 兼行
	추	10. 7-10	4	경기 양주	세자 代行
27년(1445)	추	9. 29-10. 6	8	강원도 평강	세자 代行
31년(1449)	춘	2. 28-3. 4	6	경기 풍양	세자 代行

세종대 강무 일수는 세종이 질병 치료를 위해 강원도 伊川의 溫井에 湯沐을 兼行하였던 57일간의 세종 24년(1442) 춘등 강무를 제외하면,²⁴⁾ 최소 4일에서 최대 14일까지로서 대부분 10일 내외였다. 세종 재위 기간 총 강무 일수는 334일로서 1회 평균 11일이지만 湯沐을 겸행한 세종 24년의 춘등 강무일을 제외하면 평균 9.6일로서 태종대보다 약간 짧아졌다.

세종대에도 춘등 강무가 16회로 추등 강무 14회보다 약간 많은 편이었고, 강무 일수도 춘등 강무가 추등 강무보다 하루 정도 더 많았다. 강무 장소는 태종대에 경기,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등 다양하였던 데 비하여 세종대에는 6회의 경기 강무를 제외하면 24회의 강무가 강원도에서 행해졌다. 경기에서는 楊州에서 10년(1428) 봄과 14년(1432) 가을, 그리고 世子가 대행한 24년(1442) 가을 등 세 차례, 廣州에서 9년(1427) 가을에 한 차례, 그리고 수원에서 17년(1435) 가을에 한 차례 시행되었다.

세종대에 주로 강원도 평강과 철원 등지에서 강무가 행해진 것은 태종대에 여러 지역에서 강무가 행해짐으로써 파생된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무장으로 정해지면 백성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私獵은 물론, 경작과 벌목이 금지 됨으로써 인근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었다. 비록 예정된 지역에서 강무가 행해지지 않더라도 강무장을 관리하는 수령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강무장으로 지정된 지역의 백성과 수령은 그 지역을 강무장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늘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세종은 강무장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세종 2년(1420) 2월에는 경기의 廣州·陽根, 鐵原·安峽, 강원도의 平康·伊川, 橫城·珍寶등 모두 4개 지역을 강무장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강무장에서 해제하였다.²⁵⁾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 6년(1424)에 구체적으로

24) 『世宗實錄』 권95, 24년 3월 甲子(3)조.

25) 『世宗實錄』 권7, 2년 2월 庚申(22)조, “宣旨 講武 京畿廣州楊根等處 爲一所 鐵原安峽等處 爲一所 江原道平康伊川等處 爲一所 橫城珍寶等處 爲一所 如是定所 其標內在 前居住人

언급되는데, 경기 연천, 안협, 삭녕, 임강과 강원도 김화, 금성, 회양, 그리고 황해도의 우봉 등지로서 백성들이 개간하여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였다.²⁶⁾ 그러나, 강원도 김화, 금성, 회양은 평강 강무장과 가까이 있으므로 그대로 강무장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병조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 지역은 평강 강무장에 포함되었다. 또한 강무장 확보와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경기에 속해 있던 철원부를 강원도에 부속시키고 충청도 죽산을 경기에 붙이는 조치가 있었다.²⁷⁾

이처럼 세종대에는 거의 매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강무가 행해졌으며, 강무 일수는 대략 10일 내외였고, 주로 강원도 철원과 평강 일대에서 강무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세조대의 강무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과 그 뒤를 이은 단종대에는 선왕에 대한 服喪으로 인해 한 차례의 강무도 행해지지 않았으며, 그 뒤를 이은 세조대에 이르러 강무는 크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무 회수도 줄고 강무 일수도 2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다. 세조 2년(1456) 가을에 강원도 평강에서 15일간 강무를 시행한 이후에는 5년 동안 강무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7년(1461) 봄에 경기 포천에서 5일간, 그해 가을에 경기 豊壤에서 3일간 강무를 시행한 이후로 세조 10년까지 매년 한두 차례 서울에서 가까운 풍양, 청계산, 아차산 등지에서 2~5일간의 강무가 시행되었을 뿐이다. 세조대 강무 시행 사례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조대에는 재위 14년 동안에 9회의 강무가 있었지만 말년에 온천 요양차 충청도 온양에서 장기간 머문 것을 제외

及已耕田外 新到人及新墾伐木私獵等事 一禁”.

26) 『世宗實錄』 권25, 6년 9월 辛卯(19)조.

27) 『世宗實錄』 권66, 16년 11월 甲戌(1)조.

<표 3> 세조대 강무 시행 사례

년 도	춘/추	기 간	일수	장 소	비 고
세조2년(1456)	추	9. 28-10. 12	15	강원도 평강, 철원	齊陵 祭祀 兼行
7년(1461)	춘	2. 29-3. 3	5	경기 포천	
	추	10. 10-12	3	경기 풍양	세자 대동
8년(1462)	추	9. 27-10. 6	10	강원도 평강, 철원	
	추	11. 4-5	2	경기 풍양	
9년(1463)	춘	2. 18-19	2	경기 청계산	
	추	10. 3-7	5	경기 풍양	中宮 동행
10년(1464)	추	10. 2-4	3	경기 풍양, 아차산	中宮, 세자 대동
14년(1468)	춘	1. 27-3. 12	44	충청도 온양	中宮, 세자 대동, 湯沐 兼行

하면 강무 일수는 평균 5.6일 정도에 불과하고, 강무 지역도 두 차례만 강원도에서 강무하였을 뿐 대부분은 서울 근교였다.

세조대에 강무가 축소된 배경은 세조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단종을 폐위시킨 정치적 부담을 상쇄해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종대에 완성된 陣法으로 인해 군사 훈련의 방식이 전환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조는 3년(1457) 10월에 강무장을 대대적으로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세조는 강무를 田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苑囿는 임금의 놀고 즐기는 곳이 아니며, 제사에 이바지하고 講武를 할 뿐인데, 이제 講武場이 넓고 멀어서 국가에 이익이 없고, 또한 禽獸가 곡식의 싹을 해치니, 관원을 보내어 땅의 적정 여부를 심찰하여 그 경계를 정하고, 나머지는 일체 모두 이를 폐지하고, 백성들이 경작하고 사냥할 수 있도록 하라. 후세의 임금이 田獵을 좋아하면 이를 늘릴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자는 이를 스스로 폐할 것이다. 내가 전렵의 즐거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어찌 백성을 撫恤하지 않겠는가? 나의 계획은 이와 같을 뿐이다.”²⁸⁾

28) 『世祖實錄』 권9, 3년 10월 丁未(17)조, “上曰 苑囿非人君遊樂之所也 供祭祀講武事而已 今講武場 延袤廣遠 無益於國 而禽獸又從而害苗 其遣官審度地宜 定其界限 自餘日皆罷之

K C I

聽民耕獵 後世之君 喜田則益之 其不喜者罷之 予非不知田獵之爲樂也 然豈不恤民 予計若此而已”.

세조는 이처럼 강무를 임금이 田獵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무장을 폐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한 세조는 강무 전에 軍士를 징집하여 제대를 편성하고 군사를 查閱한 뒤에도 강무에 동원하지 않고 해산시키는 일이 잦았다. 세조 8년(1462) 10월에는 충청·전라·경상도의 군사를 살곳이에 집결시키고 제대를 편성하여 장수를 임명하였지만, 11월의 강무시에는 단 하루만 군사를 동원하여 사냥하고 해산시켰다.²⁹⁾ 이처럼 세조대에는 강무에서 목적하는 군사훈련과 薦禽 기능이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薦禽을 위해서는 멀리 갈 필요가 없으며, 군사훈련을 위해서는 사냥에 동원하는 것보다 大閱을 통한 진법 훈련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조대 강무는 경기 豐壤(현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과 청계산, 아차산 등 가까운 곳에서 2, 3일의 단기간에 행해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세조는 강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남산 등지에서 하루 일정의 사냥인 打圍를 행하기도 하였다.³⁰⁾

(4) 성종대 이후의 강무

성종대에는 성종 4년(1473) 가을에 처음으로 강무가 시행되었다. 예종 服喪이 끝난 성종 2년(1471) 가을에 兵曹에서 강무를 청하였으나, 성종은 예종의 3년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고,³¹⁾ 성종 3년(1472)에는 흉년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종 4년 10월에 비로소 경기 豐壤에서 강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때에

29) 『世祖實錄』 권29, 8년 10월 丁亥(26)조, 동년 11월 甲午(4)조.

30) 『世祖實錄』 권34, 10년 8월 辛丑(20)조와 同 권43, 13년 8월 戊戌(5)조 참조.

31) 『成宗實錄』 권11, 2년 8월 甲辰(4)조, “兵曹請行秋等講武 命停之 院相韓明澮尹子雲 啓于大王大妃曰 拜英陵還薦時 爲鍊兵 暫行講武 無弊矣 傳曰 主上以爲 今雖從權卽吉 然三年未畢 親臨講武 於心未安 故停之 難以更請”.

도 성종은 아직 17세의 어린 나이여서 사냥을 구경하였을 뿐 직접 사냥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³²⁾ 그 후 2년 간격으로 秋等 강무를 시행하였으나, 성종 10년(1479)년의 강무 이후에는 10년동안 강무가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종 20년(1489)과 23년(1492)에 한 차례씩 시행되었을 뿐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처럼 성종대에는 재위 25년 동안 단 6 차례의 추등 강무가 시행되었을 뿐이다. 강무 일수는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6일까지로서 평균 7.7일이었으며, 강무 장소는 성종 20년의 강원도 철원·평강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에서 가까운 豊壤, 龍仁, 包川 등지였다.

이렇게 성종대에 강무가 소홀하게 된 데에는 武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둔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는 성종대에도 매년 강무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었지만 그때마다 강무를 정지시킬 구실만 있으면 강무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성종 5년(1474) 봄에는 3道の 군사를 징집하여 훈련하는 도중에 正兵 한 명과 말 2필이 벼락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강무를 정지시켰으며,³³⁾ 성종 8년(1475) 봄에는 元

<표 4> 성종대의 강무 사례

년 도	춘/추	기 간	일수	장 소
성종 4년(1473)	추	10. 18-20	3	경기 풍양
6년(1475)	추	9. 27-10. 1	4	경기 용인
8년(1477)	추	10. 3-8	6	경기 풍양
10년(1479)	추	10. 2-17	16	경기 양주, 포천
20년(1489)	추	10. 2-13	12	강원 김화, 평강, 철원
23년(1492)	추	10. 12-16	5	경기 풍양

32) 『成宗實錄』 권35, 4년 10월 丙子(18)조.

33) 『成宗實錄』 권39, 5년 2월 戊午(3)조.

자의 병을 구실로 강무를 중지시켰고,³⁴⁾ 그 후로도 흉년, 기후 등을 이유로 강무를 자주 정지시켰던 것이다. 성종 18년(1487)에는 명나라 憲宗의 죽음을 이유로 성종이 강무를 중지하려 하자, 의정부와 사헌부, 병조에서 강무를 거행할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들은 강무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① 강무한지 10여년이 지나서 武備가 해이해졌다. ② 황제의 喪制는 7일에 끝나므로 그 이후에 강무를 하면 無禮가 아니다. ③ 이미 병졸을 징집하여 근교에 모여 있으니 중단하기 곤란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성종도 강무를 중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만 일수를 적절히 줄여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³⁵⁾ 그러나, 며칠 뒤 성종은 그 일로 마음이 편치 못해 침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兩 大妃도 강무 정지를 권하고 있다면 강무 중지를 희망하자 대신들도 강무 정지에 동의하고 말했다.³⁶⁾ 성종 19년(1488) 가을에도 성종은 大妃가 寒熱症으로 오래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강무를 정지시켰다.³⁷⁾

태종과 세종대에는 오히려 국왕이 강무를 시행하려하고 대신들은 강무 정지를 요구하였던데 반하여, 성종대에는 대신들은 강무 시행을 청하고 있는데 국왕이 강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산군대에 더욱 심화되었다. 연산군은 재위 12년간 단 한 차례도 강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연산군 5년(1499) 가을에 경기 西山으로 강무를 위해 출발하였으나 大雨雷電으로 1박 후 환궁한 것이 유일한 강무였다.³⁸⁾ 연산군은 이 외에도 몇 차례 강무를 계획하였으나 강무 중지를 요구하는 의론이 많아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연산군은 근교에서 사냥(打圍)하기를 좋아하였던 것 같다. 연산군 6년(1500) 10월에 연산군이 강무를 계획하여 군사를 사열한 뒤에 큰비가 오자 강무를

34) 『成宗實錄』 권76, 8년 2월 庚寅(21)조.

35) 『成宗實錄』 권207, 18년 9월 乙丑(29)조.

36) 『成宗實錄』 권208, 18년 10월 戊辰(2)조.

37) 『成宗實錄』 권 220, 19년 9월 壬申(12)조.

38) 『燕山君日記』 권35, 5년 9월 甲申(27)조.

중지하고 군사를 해산시켰는데,³⁹⁾ 며칠 뒤 연산군은 다시 楊州에서 打圍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연산군은 “옛날에도 16일 동안 강무한 전례가 있는데 1년에 한두번 打圍하는 것이 왜 옳지 않다는 말이냐?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는,⁴⁰⁾ 하루동안 양주에서 타위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는 군사의 훈련보다는 사냥만을 위한 놀이로 변질된 것이라 볼 수 있다.⁴¹⁾

중종대에는 강무에 대한 논의조차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중종 31년에 처음으로 강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때, 중종은 “兵曹는 마땅히 강무에 대한 것을 취품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50년 동안 폐지된 채 거행하지 않았다. 특히 군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將士까지도 알지 못하니 軍帥이 요즘처럼 해이해진 때가 없었고, 士卒들의 게으름 또한 너무 심해졌다. 사졸들이 하루의 打圍도 싫어하는데 하물며 강무이겠는가”라고 개탄하였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대에는 한 차례도 강무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講武가 시행된 것은 임진왜란을 당한 이후인 선조 28년(1595) 9월이었으니,⁴³⁾ 성종23년(1492)의 추등 강무 이후 100년이 지난 뒤였던 것이다.

39) 『燕山君日記』 권39, 6년 10월 甲申(3)조.

40) 『燕山君日記』 권39, 6년 10월 己亥(18)조.

41) 講武와 打圍는 그 목적과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다. 講武는 말 그대로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여 사냥을 하되 짐승을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종의 기동 훈련을 시키려는 것이고, 打圍는 오로지 짐승을 많이 잡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講武는 보통 10여 일의 기간을 설정하여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거행되는 데 반해 打圍는 대개 하루 일정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中宗 31년 6월의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당시 講武에 대하여 의론하는 자리에서 중종은 “祖宗朝에서는 큰 講武는 강원도에서 하였고 작은 講武는 陽根과 豊壤 등처에서 하였다. 큰 강무는 10여일, 작은 강무는 5일에 불과하였지만 작은 강무라 할지라도 徵兵 및 모든 일이 큰 강무와 다르지 않으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講武를 하려면 豊壤이 좋겠고, 소략하게 打圍만 하려면 陽根이 좋겠다.”(『中宗實錄』 권82, 31년 6월 甲辰조)라고 하여 講武와 打圍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中宗實錄』 권82, 31년 6월 甲辰(21)조.

KCS I

43) 『宣祖實錄』 권67, 28년 9월 己卯(10)조.

4. 강무 시행의 군사적 기능

(1) 동원 군사의 규모와 편성

강무의 근본 목적이 군사를 동원하여 사냥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강무에는 항상 驅軍으로 군사가 동원되었다. 동원되는 군사의 종류와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달라졌고 점차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었다.

최초의 강무라고 할 수 있는 태조 6년 강무에는 동원된 군사의 규모를 알 수 없으나, 태종 2년에 “安城君 李叔蕃에게 명하여 甲士 5백명을 거느리고 郊外에서 사냥하게 하였다.”⁴⁴⁾고 하고, 태종 10년의 추등 강무에는 “다만 甲士 1천명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라.”⁴⁵⁾는 기록으로 볼 때, 초기의 강무에서는 도성 내 軍士를 강무에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규모가 커진 태종 14년 추등 강무에서도 확인된다. 이 때에는 “임금이 ‘弊가 농민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라’ 하여 軍器監 소속의 雜色軍丁과 侍衛軍의 隊長과 隊副, 그리고 京畿의 當領船軍과 才人·禾尺 등을 징발하여 驅軍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5천명이었다.”⁴⁶⁾고 한 것으로 볼 때, 지방의 군사는 동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군사를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태종 16년(1416) 2월에 충청도 태안에서 행한 춘등 강무때 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에는 煙戶, 騎船軍, 侍衛軍, 別牌 등 7천명의 충청도 군사가 동원되었다.⁴⁷⁾ 그것은 강무장이 충청도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충청도의 군사들만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44) 『太宗實錄』 권4, 2년 10월 丙子(26)조.

45) 『太宗實錄』 권22, 11년 4월 壬辰(4)조.

46) 『太宗實錄』 권28, 14년 9월 壬寅(3)조.

47) 『太宗實錄』 권31, 16년 2월 丁卯(4)조.

보여진다. 그 후 태종 17년의 원주 강무시에는 강원도 군사 뿐만 아니라 경기와 충청도의 군사가 동원되었다.⁴⁸⁾ 이 때 동원된 군사의 규모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태종 10년의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종 10년 충청도의 시위패는 1,593명이었고, 강원도의 시위패는 1,248명이었으므로⁴⁹⁾ 京畿 시위패를 이들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한다면 동원된 군사의 규모는 4천여 명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강무시에 해당 지방의 군사를 동원하다보니 강무장이 있는 지방에서는 불만이 많았고, 관찰사들은 자기 道에 강무장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세종 7년의 강원도 강무에서는 강원도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경기·충청·경상·전라도에서 올라온 當番 侍衛牌와 別牌를 驅軍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⁵⁰⁾ 이 때 동원된 군사의 규모는 세종 8년의 각도 시위패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세종 8년 각도 시위패의 규모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세종 8년 侍衛牌 규모⁵¹⁾

	忠淸道	慶尙左道	慶尙右道	全羅道	黃海道	비 고
牌 數	14	14	14	14	17	매월 1패씩 번상
1牌 人員	100	50	100	50	150	
侍衛牌 規模	1,400	700	1,400	700	2,550	

48) 『太宗實錄』 권33, 17년 2월 갑신(27)조에 의하면 “橫城 등지의 驅軍·防牌·擧隊長·擧隊副를 합쳐서 1,091명, 別軍 160명이었고, 강원도의 步軍 1,200명, 馬軍 300명이었으며, 충청도의 步軍 250명, 馬軍 300명이었고, 경기의 250명이었다.”고 하여 총 3천 5백여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49) 『太宗實錄』 권19, 10년 2월 辛丑(4)조.

50) 『世宗實錄』 권27, 7년 2월 辛酉(21)조.

51) 이현수, 『朝鮮初期 軍役制度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14쪽에서 轉載.

이 <표 5>에는 京畿의 시위패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세종 7년에 강무에 동원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번상 시위패의 인원수가 300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경기의 번상 시위패도 200명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당시 강무에 동원되었던 시위패와 별패를 합한다 하더라도 5백여 명 수준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강무시 각도의 군사를 징발하는 것은 그후 常例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16년의 춘등 강무에서 세종은 강무를 조기에 마치고 환궁하려 할 때, “강원·충청·경상·전라도의 군사는 모두 놓아 보내라.”고 하였다가 숙소에 이르러 “경기의 군사도 놓아보내라.”고 한 것을 보면,⁵²⁾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도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동원되었던 군사는 당번 시위패와 별패로서 강무에 동원되면 한 차례의 番上 근무를 면제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³⁾

강무에 동원된 군사의 규모가 커지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驅軍의 편성은 세조 7년 2월의 춘등 강무에 대한 실록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⁵⁴⁾ 이 때에도 경기, 개성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군사가 징발되었는데, 騎兵이 8,840명, 步兵이 800명으로서 총 9,640명의 규모였다. 이들을 살곳이에 집결시키고 제대를 편성하였는데, 전 군사를 左廂과 右廂으로 나누고 左廂大將과 右廂大將을 임명한 다음, 廂은 각각 3衛로 편성하여 衛將을 임명하고, 各衛를 4部로 나누어 部將을 임명하였으며, 各部를 4統으로 나누어 統將을 임명하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2廂 - 6衛 - 24部 - 96統으로 편성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統은 대략 100명의 군사로 편성되는 셈이고, 평균적으로 기병 92명과 보병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국왕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별도의 官員이

52) 『世宗實錄』 권63, 16년 3월 壬寅(25)조.

53) 『世宗實錄』 권62, 15년 10월 戊午(9)조, “兵曹啓 近來每年春秋講武 令京畿侍衛牌爲驅軍 而除其番上 故兵仗馬匹專不整備 其守令亦不檢察 畿內精兵 有名無實 乞依他道例 每朔番上 點閱還送 當春秋講武之時 本曹點閱軍裝 爲驅軍 從之”

54) 『世祖實錄』 권23, 7년 2월 己亥(28)조.

있었다. 병조판서를 비롯한 7명의 문무 관원을 兼宣傳官으로, 우의정을 비롯한 7명의 관원을 守相으로, 刑曹判書를 비롯한 7명을 守將으로, 吏曹 參議를 비롯한 3명을 守門將으로, 승지 2명을 守宮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은 동원되는 군사의 규모에 따라서 가감되었다. 세조 7년 추등 강무에서는 2廂 - 8衛 - 32部 - 128統으로 편성하였는데,⁵⁵⁾ 군사의 수가 그 해 춘등 강무 때보다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조 8년에는 9월과 10월 두 차례 추등 강무가 시행되었다. 9월 강무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그리고 황해도 군사 騎兵 7천 8백여 명과 보병 3천 6백여 명을 징집하고, 京中의 騎兵 2천 4백여 명과 步兵 3천 6백여 명을 합하여 총 1만 7천 4백여 명의 군사를 2廂 - 10衛 - 50部 - 200統으로 편성하였다.⁵⁶⁾ 이때 1統의 군사수는 대략 90여 명이 되는 셈이다. 10월의 강무에서는 京畿와 개성부, 그리고 충청도의 군사를 징집하였는데 그 수가 騎兵과 步兵을 합하여 14,361명이었다. 이를 3廂 - 9衛 - 45部 - 180統으로 편성하여,⁵⁷⁾ 1統의 군사는 대략 80여 명이었다. 세조 8년에 두 차례로 나뉘어 동원된 군사를 합하면 3만 2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는 조선 초기 강무에 동원된 군사가 가장 많은 경우로 보인다.

성종대 이후에도 동원되는 군사의 규모는 대체로 그 수준이 유지되었다. 성종 20년 10월에 있었던 추등 강무에서는 2만 5천여 명이 징집되었고,⁵⁸⁾ 비록 강무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연산군 10년(1504)과 11년(1505)에는 3만여 명이 징집되었다.⁵⁹⁾

동원된 인원은 軍士 외에도 輜重을 위한 인원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성종 20년 7월에 강무에 동원할 군사의 규모를 논의할 때 영의정 尹弼相에 의하

55) 『世祖實錄』 권26, 7년 10월 丙子(10)조.

56) 『世祖實錄』 권29, 8년 9월 戊午(27)조.

57) 『世祖實錄』 권29, 8년 10월 丁亥(26)조.

58) 『成宗實錄』 권230, 20년 7월 丁巳(1)조, 추등 강무에 동원할 군사의 수를 3개월 전에 결정하여 各道에 내려 보냈음을 알 수 있다.

59) 『燕山君日記』 권59, 11년 9월 丙戌(5)조.

면, “을 가을 강무에는 軍卒 2만 5천명에 輜重을 아울러 헤아린다면 그 수가 6, 7만이나 되니,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⁶⁰⁾라고 하였는데, 이 때 輜重에 동원된 인원은 바로 軍士에게 지급된 保人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⁶¹⁾

강무에 동원되는 대상은 下番 중인 正兵들로서 번상 정병과 유방 정병이 모두 대상이었다.⁶²⁾ 다만 당시 番上 또는 留防의 당번으로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되었으며, 강무 직후 入番하게 되는 군사도 제외되었다.⁶³⁾ 군사는 강무 시작 1주일 전까지 살곳이에 집결하여 梯隊를 편성한 다음, 국왕에 의한 검열을 받았다. 예를 들면, 성종 20년 추동 강무를 보면, 各道の 군사는 9월 24일까지 살곳이에 집결하여 陣을 치고 있다가, 9월 28일에 성종이 직접 閱兵하는 大閱을 받은 다음, 10월 2일에 살곳이를 출발하여 10여 일 동안 講武에 참가하였다가 귀향하는 일정이었다.⁶⁴⁾ 군사가 집을 떠나 있는 기간은 강무 일수 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서울까지 왕래하는 기간과 장무 전에 大閱과 習陣에 대한 훈련 기간을 합하면 실제로 거의 한달 가량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종 20년 추동 강무에 2만 5천명의 군사가 동원되었다는 점은 당시의 전국 군사 규모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선 시기이긴 하지만, 성종 6년 각도의 정병 수는 다음 <표 6>과 같은데 여기에서 강무에 동원되지 않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유방 정병과 번상 정병의 수는 5만 3천여 명으로서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강무에 징집이 면제된 入番者와 入番 대기자를 제외하면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0) 『成宗實錄』 권230, 20년 7월 癸亥(7)조.

61) 조선 초기에 正兵(騎兵·步兵) 에게는 평균 2.5명의 보인이 주어졌다(이현수, 「조선초기 군역제도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7, 71쪽).

62) 番上正兵은 상경하여 5위에 소속되는 정병이며, 留防正兵은 각 지방의 營이나 鎭에 入番하는 정병이다.

63) 『成宗實錄』 권230, 20년 7월 庚午(14)조.

64) 위와 같음.

<표 6> 성종대(성종 6년) 정병 규모⁶⁵⁾

	忠淸道	全羅道	慶尙道	江原道	黃海道	京畿	開城府	平安道	永安道	계
계	12,500	18,651	15,022 (15,122)	1,427 (1,424)	3,082	1,594	600	12,947	5,737	72,097 (71,657)
留防	4,500	6,500	12,000	600	1,600		600	12,947	5,737	44,484
番上	8,000	12,151	3,122	824	1,482	1,594				27,173

()은 번상과 유방의 실제 합

이처럼 강무는 지방 군사력의 핵심인 정병을 동원하여 제대를 편성하고 강무장에 기동하는 군사훈련이었으며, 이는 상설 병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조선 초기의 효과적인 군사력 유지 방법이었던 것이다.

(2) 군사 동원 절차

강무 시행일이 결정되면 국왕은 먼저 징집할 군사를 지정하여 동원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대개 강무가 시작되기 한 두 달 전에 내려졌으나 때로는 임박해서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세종 8년의 추등 강무 시에는 10월 초에 계획된 강무에 대하여 40일 전인 8월 23일에 결정하였으며,⁶⁶⁾ 세종 15년의 추등 강무 시에는 9월 27일에 계획된 강무를 22일 전인 9월 5일에 결정하였다.⁶⁷⁾ 또한 세조 원년의 추등 강무는 8월 20일에 결정되었으며, 성종 18년의 춘등 강무는 前年 12월에 결정되었다.⁶⁸⁾

65) 이현수, 앞의 논문, 70쪽에서 轉載.

66) 『世宗實錄』 권33, 8년 8월 甲申(23)조.

67) 『世宗實錄』 권61, 15년 9월 甲申(5)조, 이 때는 강무 장소가 횡성에서 평강으로 바뀌고, 강무 일수도 7,8일로 축소되는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속히 알려고 강조하였다.

68) 『成宗實錄』 권198, 12년 12월 甲戌(3)조, 그러나 이 강무는 시행되는 못하였다.

이렇게 강무 계획이 하달되면 군사를 동원하게 되어 있는 道の 병마절도사와 각 고을의 수령은 군적을 살펴 징집 대상자를 확인하였다. 군적은 軍役 부과 대상자의 身上과 軍역의 종류를 기록한 장부로서 호적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⁶⁹⁾ 수령들은 고을별 할당 인원을 확인하고 징집에서 제외되는 入番 중인 군사와 입번 대기자를 제외한 인원 중에서 강무에 동원할 인원을 군적과 대조해 점검해 놓아야 하였을 것이다.

군사의 징집에는 兵符를 사용하였다. 兵符는 태조 6년에 虎符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⁷⁰⁾ 세종 14년에 제도화된 것으로서, 그 경위는 다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⁷¹⁾

병조에서 아뢰기를, “『六典』을 살펴보면, ‘兵符는 尙瑞司에서 내어 주고 받아들이며 건사하는데, 御印을 받아 봉하여 간수하였다가 각도의 觀察使·水陸節制使를 임명하여 보낼 때에는 병부의 오른쪽[右符]을 친히 주고, 혹시 發兵하게 될 때에는 本曹에서 위에 아뢰어 병부의 왼쪽[左符]을 내어 보내어서 두 쪽을 서로 맞춰 본 뒤에야 발병을 하되, 일이 끝나면 도로 바치게 한다.’고 하였삼고, 漢나라·唐나라 제도에는, ‘대체로 발병할 때에는 兵符만을 서로 맞추어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詔勅과 羽檄도 있었다.’고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徵兵이 있을 것 같으면 本曹에서 아뢰고, 左符와 아울러 教書와, 본조에서 교지를 받자온 것으로 통문하는 關子 등을 말 잘 타는 사람을 띄워서 보내고, 이 병부를 받는 官員[受符官]은 이를 상고하여 맞춰 본 뒤에 시행하되, 교서는 『洪武禮制』에 의거하여 勅符와 丹符는 미리 알리는 것을 不許하며, 또 本處의 官司가 영접하는 것도 불허할 것이니, 바로 本衙門에 이르러서야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처럼 兵符는 수령이나 관찰사 등이 임의로 군사를 징발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였다. 兵符는 둥글고 납작하게 다듬은 나무쪽에 한 면에는 ‘發兵’이

69) 軍籍 작성과 軍額의 확보 과정에 대하여는 이현수, 앞의 논문 참조.

70) 『太祖實錄』 권12, 6년 10월 甲午(16)조.

71) 『世宗實錄』 권58, 14년 10월 辛丑(16)조.

라 쓰고, 다른 면에는 ‘○○道觀察使’나 ‘○○道節度使’, 또는 鎭의 경우에는 ‘○○鎭’이라 쓴 다음, 그 가운데를 잘라 右半符는 관찰사, 절도사, 진에 주어 보관하게 하고, 左半符는 궁중에 보관하였다가 군사 징집을 발령할 때 국왕의 敎書와 함께 좌반부를 내려주면 이를 받은 관찰사와 절도사, 鎭將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반부를 좌반부와 맞춰보고 정확히 맞을 때 비로소 군사를 징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⁷²⁾

강무시에도 이와 같은 절차로 군사를 징발하였다. 실제로 세조 8년 추등 강무를 예로 보면,⁷³⁾

司饗別坐 許峻을 京畿에, 宗簿寺 主簿 朴繼金을 開城府에, 尙瑞 錄事 金承慶을 충청도에 보내었다. 모두 發兵符를 주어 徵兵하게 하고, 아울러 그 道의 관찰사와 留守에게 諭示하기를, “금년 겨울에 講武할 군사는 모름지기 10월 23일까지 올려 보내게 하라.” 하였다.

라고 하여 발병부를 사용하여 군사를 징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징집 대상으로 지명된 군사는 강무 일수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고려하여 대개 1개월 분량의 식량과 기본 무기인 활과 화살, 그리고 갑옷과 雨具 등을 지참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기병의 경우에는 馬草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도착한 군사는 살곶이(箭串坪;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 집결하였다. 살곶이는 넓은 草地로 되어 있어서 군사와 軍馬의 宿營이 용이하고, 陣法을 훈련하는 데 편리한 지형으로서 매년 大閱이 행해지던 장소였다. 여기에서 梯隊가 편성되고, 각급 장수가 임명되면 그들에 의해 點呼와 기본적인 檢閱이 이루어졌는데, 때로는 국왕이 직접 閱兵을 실시하는 大閱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72) 『經國大典』兵典, 符信조.

73) 『世祖實錄』권29, 8년 10월 甲戌(13)조.

(3) 훈련 방법과 내용

강무는 군사들을 훈련시켜 유사시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강무를 시행할 때에는 훈련의 교범이 되는 지침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태조 4년에 태조가 의흥삼군부로 하여금 「蒐狩圖」와 「陣圖」를 간행하게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⁷⁴⁾ 이 교범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태조 6년에는 訓導官이 各道와 各鎭에 파견되기도 하였으며,⁷⁵⁾ 그 해 12월에 京畿 楊州에서 강무를 행한 후, 이듬해 5월에는 그곳에서 「陣圖」를 연습시키기도 하였다.⁷⁶⁾ 태조 때 만들어진 「陣圖」는 정도전이 찬술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나,⁷⁷⁾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서 당시의 훈련 내용을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태조는 7년 7월에 「陣圖」가 제대로 교육되고 있는지 감사하기 위하여 宦者 朴英文을 전라도와 경상도에 보냈고,⁷⁸⁾ 다시 巡軍 千戶 金天益을 전라도와 경상도의 각 鎭에 보내어 僉節制使로서 「陣圖」에 통하지 않은 사람을 매질하게 하였으며,⁷⁹⁾ 또한 「陣圖」를 익히지 않은 이유로써 三軍節度使와 상장군·대장군·軍官 등 2백 92인을 문책하기도 하였다.⁸⁰⁾ 그 결과 侍衛하는 軍官으로서 「陣圖」를 익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였다.⁸¹⁾

태종대에도 이 「陣圖」는 군사 교범으로서 계속 활용되다가 세종 3년에 卞季良이 「陣說」을 지어 바치자 세종이 이를 군사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⁸²⁾

74) 『太祖實錄』 권7, 4년 4월 甲子(1)조.

75) 『太祖實錄』 권12, 6년 8월 戊子(9)조.

76) 『太祖實錄』 권14, 7년 윤5월 癸卯(28)조.

77) 『太祖實錄』 권14, 7년 윤5월 甲辰(29)조.

78) 『太祖實錄』 권14, 7년 6월 戊辰(24)조.

79) 『太祖實錄』 권7, 7년 7월 庚子(27)조.

80) 『太祖實錄』 권14, 7년 8월 丁未(4)조.

81) 『太祖實錄』 권14, 7년 8월 庚戌(7)조.

82) 『世宗實錄』 권50, 12년 12월 庚午(4)조.

그 후 세종은 변계량의 「陣說」을 보완하여 세종 15년에 「癸丑陣說」이라 이름하여 간행하게 하였는데, 文宗 원년에 이에 註를 달고 보완하여 「陣法」으로 간행하였다.⁸³⁾ 이 「陣法」은 세조 3년에 개정되어⁸⁴⁾ 이후 군사 훈련의 기본 교재가 되었다.

陣法에 의한 군사 훈련은 문종대에는 入番, 出番하는 군사들에게 매월 2일, 12일, 22일, 한 달에 3일씩 행하도록 하고,⁸⁵⁾ 外方에서는 매월 2일과 22일, 한 달에 두 차례 행하도록 하였는데,⁸⁶⁾ 『經國大典』에는 入番 군사들에게는 매월 2일과 16일에, 諸鎭에서는 매월 16일에 習陣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⁷⁾

강무에 동원되는 군사들은 평소 이러한 陣法 훈련을 받아오다가 강무를 통하여 實戰과 같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강무장에서의 훈련 내용은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히 알 수 없으나, 태종 27년에 병조에서 작성한 講武 事宜를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⁸⁾

병조에서 강무 事宜를 아뢰었다. 그 啓聞은 이러하다. “徒卒로 하여금 상雜하지 못하게 하고 駕前의 禽獸는 要射하지 못하며, 大小人이 圍內에서는 먼저 갈 수 없으며,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笞 50대를 때리는데, 重한 자는 杖 80대를 때리고, 2품 이상은 根隨를 죄주는 것이 이미 나타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講武를 당하여 말을 달려서 駕前에 들어가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조금도 주상을 공경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세우고 엄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根隨만을 죄주는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법령을 위반하는 자는 2품 이상은 啓問하여 科罪하고, 3품 이하는 그 죄를 直斷하

83) 『文宗實錄』 권 10, 원년 10월 己丑(24)조.

84) 『世祖實錄』 권7, 3년 3월 己未(20)조.

85) 『文宗實錄』 권3, 즉위년 8월 甲午(23)조.

86) 『文宗實錄』 권10, 2년 3월 辛酉(10)조.

87) 『經國大典』 兵典, 教閱조.

88) 『太宗實錄』 권 27, 14년 2월 己巳(25)조.

여서 軍法을 엄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강무장에서의 행동 준칙으로서 강무장 내에서의 엄격한 軍律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대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講武儀’로 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⁹⁾

期日 전 7일에 병조에서 여러 백성을 불러서 사냥하는 법에 따르게 하고, 병조에서 사냥하는 들판을 表示한다. 그날 未明에 旗를 사냥하는 뒤의 近郊에 세우는데, 땅의 적당한 데 따르게 하고, 여러 장수들이 각각 군사들을 거느리고 旗 아래에 집합하여서 떠들지 못하게 한다. 날이 밝아 기를 높힌 뒤에 이르는 사람은 처벌한다.

병조에서 사냥하는 명령을 발령하면, 드디어 에워싸서 사냥하게 한다. 그 兩翼의 장수가 모두 기를 세우고 에워싸는데 그 앞은 비워둔다. 御駕가 나와서 머물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장차 사냥하는 장소에 이르러 하여 御駕가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 들어간다. 유사가 북을 어가의 앞에 진열한다. 동남쪽에 있는 사람은 서향하고, 서남쪽에 있는 사람은 동향하여 모두 말을 탄다. 여러 장수들이 모두 북을 치면서 가서 에워싼 데 이르고, 이에 몰이하는 기병을 설치한다. 이미 임금께서 말을 타고 남향하면 有司가 뒤따르고, 大君 이하의 관원이 모두 말을 타고 弓矢를 가지고 어가의 앞뒤에 진열한다.

유사가 이에 짐승을 몰이하여 임금의 앞으로 나온다. 처음에 한 번 몰이하여 지나가면, 유사가 궁시를 정돈하여 앞으로 나오고, 두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병조에서 궁시를 올리고, 세번째 몰이하여 지나가면 임금이 그제야 짐승을 따라 왼편에서 이를 쏜다. 몰이할 적마다 반드시 짐승 세 마리 이상으로 한다. 임금이 화살을 쏜 뒤에야 여러 君들이 화살을 쏘고, 여러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이를 쏜다. 이를 마치고 몰이하는 기병이 그친 뒤에야 백성들에게 사냥하도록 허락한다.

89) 『世宗實錄』 권133, 五禮, 軍禮儀式, 講武儀.

여러 짐승을 서로 따르는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이미 화살에 맞은 것은 쏘지 아니하며, 또 그 面上을 쏘지 아니하고, 그 털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 것이 구역 밖으로 나간 것은 쫓지 아니한다.

장차 그치려고 하면, 병조에서 旗를 사냥 구역의 안에 세우고는, 이에 御駕의 북과 여러 장수들의 북을 크게 치면, 士卒들이 고함을 치고, 여러 짐승을 잡은 것을 기 아래에 바치면서 그 왼쪽 귀를 올린다. 큰 짐승은 관청에 바치고, 작은 짐승은 자기 소유로 한다. 使者를 보내어 잡은 짐승을 달러가서 宗廟에 올리고, 다음에는 幄殿에서 연회하고 從官에게 술을 세 巡盞를 내린다.

1. 사냥할 때는 여러 장수들이 士卒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1. 御駕 앞에 기를 세워서 瞻視를 구별하게 한다.

1. 어가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內禁衛와 司禁 이외에, 모든 雜人들을 모두 禁斷한다.

1. 三軍이 차례대로 布列하여 에워싼 속으로 짐승을 모두 몰이하여 들이는데, 빠져 나가는 놈은 군사들이 쫓아가서 화살로 쏘는데, 그 位次를 지나면 그치고 쫓지 말게 한다.

1. 모든 잡인들은 에워싼 앞으로 먼저 가게 하고, 에워싼 안에서 화살을 쏘고 매와 개를 내놓지 못하게 한다.

1. 무릇 명령을 어긴 사람은, 2품 이상의 관원은 啓聞하여 죄를 부과하게 하고, 通政大夫 이하의 관원은 병조에서 바로 처단하게 하며, 逃避한 사람은 죄 2등을 더하며, 비록 에워싼 밖이라도, 앞을 다투어 화살을 쏘아서 혹은 사람의 생명을 傷害하거나, 혹은 개와 말을 상해한 사람은 각각 本律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이와 같이 강무는 엄격한 軍律이 적용되는 훈련이었다. 단순한 사냥놀이가 아니라, 사냥을 통해 군사들에게 명령 체계를 숙달시키고, 살아 움직이는 동물에 대해 화살을 발사하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전투시 공포심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담력을 길러줄 수 있는 훈련인 것이다.

5. 맺 음 말

지금까지 講武制度的 성립 과정과 태종에서 성종대까지 강무 시행 사례, 그리고 강무의 군사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講武란 국왕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정 지역에 출동, 그 지역에서 사냥하고 복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강무는 중국 고대의 周에서 天子가 매년 春夏秋冬에 행하던 蒐(수)·苗(묘)·獮(선)·狩(수)에서 유래하였지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국왕이 직접 병력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하였던 전통과도 무관하지 않다.

조선 건국 후, 武將 출신인 태조는 스스로 궁궐 내에 간혀 있는 것을 답답하게 여겨 야외로 출동할 기회를 찾게 되었고, 이를 유교적 국가 운영과 부합시키는 방법으로 講武의 古制를 도입하였다. 太宗 때에는 사냥 절차를 규정한 蒐狩法이 제정되고(1402), 군사의 動員과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인 講武事宜가 제정되어(1414) 1년에 春秋 두 차례의 講武가 제도화 되었다. 이는 世宗대에 만들어진 「國朝五禮儀」 軍禮儀式 편에 講武儀가 수록됨으로써 조선왕조의 한 제도로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강무를 시행하는 목적은 첫째로 농한기에 군사를 훈련시켜 유사시 전투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로 사냥으로 잡은 짐승으로 宗廟 祭祀에 薦新하려는 것이고, 셋째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짐승을 잡음으로써 농사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국왕의 국토 巡視와 民情 파악이 드러나지 않은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무는 봄에는 2월 초, 가을에는 10월 초에 10여 일 동안 시행하는 것이 常例였다. 講武場은 처음에는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등지의 여러 곳에 있었으나, 講武場으로 지정되면 민간의 출입이 통제되고 사

냥이 금지되었다. 이는 중국 고대에 天子의 사냥터로 상설화된 구역이 존재하였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講武場으로 지정되는 고을에서는 講武時의 국왕 접대와 군사활동에 따른 민간의 피해 뿐만 아니라, 강무장 출입 통제에 의한 생활 불편 때문에 강무장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였다. 그리하여 몇 차례 정비 과정을 거쳐 경기에 한 곳, 강원도에 세 곳으로 정해졌다.

조선 초기 강무는 태종과 세종대에 활발히 시행되었으나 세조대에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성종대 이후 점차 군사 훈련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祭物 마련이라는 명분으로 사냥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는 성종대 이후 升平이 계속된 시대적 상황에서 전반적인 조선왕조의 군사력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무 시행에 따른 군사적 기능은 동원 훈련의 성격을 띤다. 동원되는 군사의 규모는 초기 수천에서 점차 2~3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의 동원 절차는 군정에 기초하여 국왕의 명에 의해 발부되는 兵符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원된 군사는 평소 거주지에서 훈련받은 陣法의 숙달 정도를 점검받고, 각급 梯隊로 편성되어 강무장에서 驅軍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명령 체계를 숙달시키고, 군율의 지키게 하며, 전투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없애고 담력을 키우는 기능을 가졌다.

이러한 조선 초기 강무 시행은 軍額 확대와 연계되어 이 시기 군사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나, 16세기 이후 강무 시행이 해이해지면서 군사력 또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